

개명신고서				※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, 선택항목에는 ‘영표(○)’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			
(2024년 01월 15일)							
① 개명자	본인성명	개명 전 이름		②개명 후 이름			
		한글 (성/명) 최길동	한자 (성/명)崔吉洞	한글 (성/명) 최은우	한자 (성/명)崔恩佑		
	본(한자)	慶州		주민등록번호	032215-111111		
	등록기준지	경기도 파주시 하우고개길 82 [가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기재]					
	주소	경기도 파주시 미래로562, 302동 402호 [주민등록상 도로명 주소를 동호수까지 기재]					
③허가일자		2024년 01월 04일 [법원결정문 허가일자 기재]		법원명	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[법원결정문 법원명 기재]		
④기타사항							
⑤ 신고인	성명	최은우(개명후 이름) 최은우		주민등록번호	032215-111111		
	자격	①본인 ②법정대리인 ③기타(자격 :)		개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 가능			
	주소	경기도 파주시 미래로562, 302동 402호		전화	010-1234-1234	이메일	
⑥제출인	성명	[신고인이 작성한 개명신고서를 제3자가 제출할 때만 작성-제3자 신분증 지참]					

작성방법	
※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①란 : 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. ②란 : 개명 후 이름(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)을 기재 하며,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. ③란 :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. ④란 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 ⑤란 :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. ⑥란 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	
첨부서류	
1.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. 2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	